



UR타결로 닭고기관세 차등 적용

UR협상이 지난 15일자로 완전 타결됨에 따라 매년 협상내용에 의해 닭고기 개방폭이 확대된다. 관세는 매년 일정 비율로 낮아지게 되어있는데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표1. 닭고기관세 적용기준

관세 년도	닭고기 관세(%)	비 고
1995	35 (쿼터초과분)	쿼터량7,700M/T (20%)
1996	32.75(")	쿼터량 10,400M/T (20%)
1997	30.5 (")	(쿼터량 6,500M/T) (97.1.1~6.30) 20% (97.7.1~12.31) 30.5%
1998	29	전면개방
1999	27.5	"
2000	26.0	"
2001	24.5	"
2002	23.0	"
2003	21.5	"
2004	20	"

닭고기 수입개방반대 건의서 및 회신문

본회는 지난 11월10일부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UR협상과 관련하여 닭고기 수입개방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밝혀왔다.

건의서

국정 수행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각하의 노고에 대하여 전 양계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양계업계는 육계가격이 생산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가격으로 폭락하여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농가가 도산하였거나 도산지경에 처해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크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문, 방송 등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있어 쌀, 쇠고기, 닭고기 등 15개 비교역적 관심품목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을 수정, 쌀을 제외한 14개품목을 개방하되 그중에서도 닭고기부터 개방할 것이라고 하여 우리 전체 양계인들은 정부의 이러한 줄속조치에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양계인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있을 전면수입 개방에 대비 하여야 한다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기반조성과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등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나름대로 착실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계산업은 워낙 생산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고질적인 유통구조의 모순, 인력난, 환경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제반 약조건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계업계의 어려운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닭고기의 수입개방이 전면허용된다면 양계산업 기반은 일시에 붕괴되고 전 양계농가는 도산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양계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닭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허용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양계업 뿐만 아니라 각 분야(품목)가 공히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당초 정부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약속한 비교역적 관심품목 15개 전품목에 대하여 수입개방 반대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시어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을 계속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세계농산물 교역자유화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GATT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시장개방확대, 농업보조금의 감축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 '86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미국과 EC 그리고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대립으로 당초 협상시한인 '90년 12월말로 종결시키지 못하고 7년째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5일 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협상에 참여하여오면서 각국의 상이한 농업여건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92. 4 대외협력위에서 결정하여 GATT에 제출한 이행 계획서의 내용은, 쌀 등 15개 주요농산물의 관세화계획(TE)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쌀을 제외한 14개품목은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 시장접근을 허용하되 향후 협상과정과 협상진전상황에 따라 관세화 예외품목수를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침에 의거 협상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 지난해 4월, UR농산물협상 참여국들이 GATT에 제출한 국별 이행계획서에는 미국, EC, 호주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외없는 관세화(던켈협정초안규정)를 수용하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등 일부국가는 자국농업의 특수성과 농업

여건을 고려, 일부품목에 대하여 관세화예외를 주장, 이행계획을 유보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던켈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GATT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여건하에서 농산물수출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재확인하고 있고,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관세화 원칙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거나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강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다수의 교역상대국들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한국이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에서 너무 강경한 입장으로 비협조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최근 협상이 년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국가들은 아국의 15개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화 이행 계획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상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협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의 흐름과 진전에 따라 우리의 기본입장을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UR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쌀은 관세화예외 및 최소 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에 대하여는 앞으로 협상진전에 따라 품목별 농가소득비중, 피해정도, 경쟁력등을 고려한 보호수단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화 예외, 상당한 유예기간을 갖는 조건부 관세화, 국내의 가격차만큼을 고율의 관세상당치로 부과하는 관세화 등 UR협상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보호수단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농어민단체, 학계, 언론계등의 대표로 구성된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협상대책을 수립하고 협상주요국들의 동향과 협상과정을 면밀히 분석 점검하여 향후 UR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우리의 기본 방침관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양계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동화, 규모화, 축산 공해방지시설 등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과 계란 집하장, 도계장 시설 근대화 등 축산물 유통개선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 구조개선추진사업내역(예정)**

(단위 : 백만원)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명	닭경쟁력강화	양계단지지원	종계능력검정지원	닭계열화	축산공해방지시설
	투입예산	48,600	12,000	8,000	25,000	3,800
축산물유통 구조개선	사업명	자조금 조성		계란집하장	도계장시설근대화	
	투입예산	15		1,000	10,290	

• 앞으로 우리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농산물시장개방의 문제는 우리농업에 큰 도전인 것만은 사실이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이 참여하여 국내 농업지원을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 이와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정부 혼자서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므로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 및 회원 여러분들도 600만 농민과 함께 협심하여 경쟁력 향상에 힘써 주신다면 어떠한 도전도 이겨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UR 협상 타결과 관련한 양계산업 대책 건의

본회는 지난 21일부로 농림수산부에 최근 UR협상 타결과 관련한 양계산업 대책 건의서

(양계협 305호)를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아 래-

UR협상 타결과 관련한 양계산업 대책 건의

1. 사육기반(구조개선) 구축을 위한 제도의 개선

가. 축사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 각종 허가제도의 완화

국토이용관리법상 축사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던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신고)가 가능토록 조치

• 농지에 축사를 설치코자 할 때는 농지 전용허가(신고 포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산림(임야)에 축사를 설치코자 할 때도 산림훼손허가가 아닌 산림훼손 신고만 한 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나. 축사설치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축산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축산법에 축사 건축규정 삽입 명분화)

다. 축산업을 영위기 위한 농지 매입시 통작거리 20km 및 6개월 현저 거주 조건 배제조치(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가로 인정)

라.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도 양성화 추진을 받을 수 있는 조치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기간 연장

• 축사 부지에 일부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국공유지를 임대 또는 불하를 받아 양성화 추진을 받을 수 있는 조치.

• 타인 소유 부지에 축사를 설치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도 부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농지은행에 현물 출자 또는 10년 이상 임대계약을 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는 양성화 추진 조치

• 생계유지 차원이 아닌 전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현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참여치 않는 농장에 대하여도 양성화 추진조치

마. 발효 건조된 계분 비료의 상품화 조치(비료

관리법 개정)

계분의 발효 건조시설을 하여 완벽한 계분비료를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비료공장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자기 농장의 상표를 붙여 판매할 수 있는 조치(현재는 비료 원료로만 판매 가능)

바.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축산단지 조성지대 지정 고시

사. 계종별, 사육단계별로 다양한 사육시설(계사, 자동화시설)모델 개발 보급

아. 양계장 종사 인력난 해소(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화)

2. 생산비를 가중시키는 제도의 개선

가. 배합사료,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사료원료, 축산기자재의 관세 면세

다. 축사 및 유통가공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또는 산림훼손시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농지 조성비(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전액 면제

3. 구조개선 자금지원제도의 개선

가. 현재와 같은 나열식 자금배정제도 지양
자금의 한도를 두지 말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필요자금 전액 지원

나. 지원자금의 이자를 인하

- 시설자금 : 무이자 또는 1-2%수준
- 계열화 자금 : 2-3% 수준
- 기타 폐수처리시설 자금 등 : 무이자(일부는 보조)

다. 용자제도의 완화

• 농지 담보 제도화(현재 농지는 담보취득을 기피하고 있음)

• 일반은행 또는 리스자금과 같이 감정가격의 80~90% 수준까지 대출 가능토록 조치

• 용자금액이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용자금액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자 2인이상이 연대한 이후 보증으로 대출 가능토록 조치

• 용자를 받아 시설한 물건의 후취담보 이행

• 농림수산 신용보증기금도 일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의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라. 지원대상농가 선정권 업종별 생산자단체에 위임

• 단체에서 대상자선정 신고하면 도지사를 경유, 농림수산부 장관이 확정

4. 유통구조 개선

가. 계열화사업의 활성화

• 계열 주체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 신규 계열주체에 대해서 기반 조성(시설) 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바 기존 계열주체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유통(운전)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개소당 최소한 200~500억원)

• 기존 양계농가 계열화사업 참여 의무화 및 신규농가 억제

나. 계란 집하장 증설 및 공판장화

난가공장 및 냉장, 냉동창고 병행설치 운영

다. 도계장 현대화로 닭고기 공판장화

라. 축산물 도매시장내 양계산물 공판장 설치 난가공장 및 냉장, 냉동 보관창고 병행 설치운영

마. 직판장 다량 설치

바. 수매비축제도 개선-공영수매 이행

사. 양계산물의 규격(등급)

기준 제도화

- 계란, 닭고기 유통규격 및 검사기준
- 양계산물 상표화에 대한 법적 근거
- 특수란 생사매 체계화

중간상인
(수집상)
배제

품질
인증제
도입

5. 사육조절 및 가격안정

가. 양계업, 종계부화업 등록제도 개선

• 등록기관 : 현행 도지사를 생산자 단체로 변경

• 등록규모 : 전업규모 이상(종계, 부화는 전업체)

• 생산자 단체는 등록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자율생산조절 유도

나. 양계산물 소비(수요량) 및 생산목표량 공표

• 정부 주도로 매년 소비 및 생산목표량 공표

• 공표결과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목표량 결정

및 자율적 생산조절

- 다. 가격안정대 설치운영
- 라. 가격폭락시 생산조절을 위한 휴업 보상제 도입

6. 소비촉진 및 우리산물먹기 범국민운동 전개

- 가. 자조금제도의 강력한 시행
 - 자조금 관련법령 개정(징수 및 납부에 대한 의무 규정 입법화)
- 나.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우리 양계산물 많이 먹기 운동 전개

7. 각종 세제지원으로 양계농가 보호 육성

- 가. 양계사 신축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나. 양계업 사업소득세 면제
- 다. 대물림양계(가업으로 전수)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면제
- 라. 양계장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
- 마. 법인전환시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바. 양계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법인세 면제

8. 수출지원

- 가. 양계산물 수출농장 지정 육성
- 나. 매년 수입물량 이상의 물량을 수출토록 조치
- 다. 수출에 대한 적자 발생시 수입관세로 충당하고 부족시는 촉발기금에서 보전

9. 국산 기자재 개발 보급 촉진

자동화시설 등 축산기자재 및 처리 시설을 전량 국가기자재를 이용한 농장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50% 보조(50%는 용자지원)

10. 국산계 개발 보급

- 가. 국산계 개발 전문업체 보호 육성
 - 국산계 개발자금 지원 : 국고 또는 촉발기금 보조
 - 세제상 특혜-국산계 개발보급에 따른 투자액에 대한 세액 전액 면제
 - 국공유지 일정기간 무상임대 또는 불하
 - 육종농장의 법적 보호 : 보호구역 설정
 - 우수품종 개발자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 : 능력검정 결과에 의거 판정
- 나. 국산계 개발협력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정부,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개

발업체

- 업무 : 정보교환, 유전자원 교환개발 및 보급 방법 등

11. 재래닭 개발 보급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 차별화 상품 유도 ————— 국제경쟁력 강화
개발 보급비 전액 국고 또는 기금에서 부담

12. 민간 양계전문연구소 설치

- 가.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인 기구로서의 법적 조치
 - 정부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나. 기능
 - 민간 양계연구소에 출자 또는 출연한 자에 대한 세제 등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

- 사료 및 사양(경영포함) 및 검사
- 육종시험연구 및 원종(유전자원) 보존
- 위생방역 시험연구 및 검사
 - 양계질병
 - 각종 예방대책 및 검색
 - 양계산물의 각종 위생검사
 - 사료위생 : 시설, 원료, 운반수단 등
- 양계산물 통계조사
 - 종계, 양계사육실태 및 동향조사
 - 부화(발생, 입추) 실태조사
 - 사육추세 및 산물시서조사
 - 수요량조사 및 전망분석
 - 생산비조사 등 양계산물에 필요한 모든 통계 조사업무

13. 주요 법정 전염병 이환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14. 피해보상

- 가. 구조조정(개선)사업 탈락 농가에 대한 전업 보상금 지급
- 나. 수입 물량에 의거 피해 발생시 직접 피해 보상금 지급
- 다. 산업피해구제 제도 활용

15. '95~'97상반기까지 수입 물량에 대한 조치

- 가. 수입 창구의 일원화

나. 닭고기 가격 상승시 수급조절 및 가공용으로
만 방출

16. 양계산업 육성보호법 제정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불용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건의

본회는 지난 7일 농림수산부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불용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건
의서(양계협 제290호)를 제출했다.

-아 래-

1)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로
많은 농가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를 만나
확고한 의지와 희망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무허가 축사 신고를
한후 양성화 추진조치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
를 밟는 과정에서 무허가 축사 부지내에 본인도
모르는 타인소유 토지(지적도상 구거 등 국공유
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아직까지 양성화 조치
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즉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 부지는 농지(밭)를 무
단 전용한 것으로서 무허가 축사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불법전용한 무허가 축사 부지)를 경작하다
그 곳에 외형상 구거(도랑)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거가 있는 지도 모르고 자기 소유 토지
인줄만 알고 불법전용하여 무허가 축사를 건축한
후 이번에 양성화 조치를 받고자 측량을 하는 과
정에서 축사의 중간 또는 귀퉁이 일부에 구거(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3) 물론 위와 같은 경우 무허가 축사 소유자가
구거가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여 자기 소유에 대해
서만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축사의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전용 면
적중 구거가 포함된 면적이 아주 작고 지적도면상
에만 구거가 표시되어 있을뿐 실질적으로 구거가
아닌, 용도가 폐기된 상태로서 불용 국공유 재산이

라 생각되오니

4)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UR협상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양축농가를 돕는다는 높
은 뜻에서 무허가 축사 소유자가 부지내에 포함된
구거(국공유 재산으로 대개의 경우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거 조성된 농지 내에 설치된 구거임)
를 임대 또는 불하받아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
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줄실 것을
건의하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성명서 발 표

본회를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대한양
돈협회 등 3개단체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즈음
하여 각 축산전문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성
명서를 발표하였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즈음한 우리의 결의

현정권은 들으라!

쌀만은 사수하겠다는 허무아침에 쌀마저 개방
불가피성을 펼치고 축산물의 전면개방을 허용하는
마당에 전국의 87만3천 축산농민들은 분노와 배신
감을 느낀다.

불가항력이라면 농민을 기만하지 말고 현실을
바로보고 그에 대응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각종 제도로 쫓겨나고 농고 외국과 싸우라는 것
은 축산업을 포기하란 것이 아닌가?

축산 경쟁국들에 비해 사료 등 모든 생산자재를
부가가치세로 10%비싸게 사도록 하면서 어떻게
살아 남으란 말인가

농민들이 업종별로 자조금제도를 하겠다해도 농
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담을 이유로 거부함은 정
부가 축산업 발전에 뜻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일부 극소수 이익집단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
는 편향적 정책으로 끝내는 한국 축산이 무너질때
도 축산관련 기관들이 존재할 줄로 아는가?

경종 및 축산농민 모두 생업을 찾아 이농하게

되던 그때에는 농림수산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선공약을 지키는데 앞장섬으로서 더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선공약을 무시하면 현 정권도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이에 전국 양축농민들은 다음 네가지를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94년부터 적용하라.

둘째, 자조금제도를 입법화 하라.

셋째, 축산분뇨처리 등 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라.

넷째,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보상제도를 수립하라.

'93년도 제2차 병아리 감별사 시험 실시

총30명이 응시하여 8명이 합격

본회 감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2월10일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 병아리 감별학원에서 '93년도 제2차 병아리 감별사 시험을 실시했다.

총 30명이 응시한 이날 감별사 시험에서는 8명이 초생추감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합격자명단

김수철, 김종근, 민은이, 양동주, 이수길, 정영선, 제진수, 최종태

차기 한국양계박람회 '95년도 개최기로

날짜, 장소 추후 확정기로

지속적인 양계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한 차기 양계박람회 개최시기 결정여부에 대한 회의가 지난 2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 차기 양계박람회 개최는 오는 '95년도 9월 중순경, 개최기간은 4일간, 개최장소는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기로 협의결정 되었으며, 차기대회를 양계부문 단독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되 기자재 전시출품자가 희망 할 시에는 타분야(돼지, 소) 기자재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잠정결정되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는 지난 6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일부지역에서는 특란물량이 다소 증가하여 약간 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각 지역 계란수급과 노계도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면에서는 서울지역 특·대란 고시가격이 각각 50원, 45원이 형성되는데 인상시 2원, 하락시 4원이 적용되어 지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물량이 다소증가로 인해 7~12원까지 낮게 거래되어 생산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상인들과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금후전망은 연말연시를 인해 12월하순부터 1월초순까지는 소비둔화로 인해 약세를 보이다가 1월중순경에는 설특수경기 대비 구매물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돼 다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UR 협상타결과 관련하여

여 국내 채란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아울러 우리 양계산물은 우리가 먹을수 있도록 우수성을 홍보문제를 시급한 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본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육추사료 생산실적으로 병아리 생산 숫자를 보면 약 3,500만수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수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어 계란 과잉생산은 상당기간 지속될것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이는 산란계 영업조직 80% 담당하고 있는 중간유통업자(중추업)가 차지하고 있어 불황을 장기간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또한 육계소비측면에 있어 실명제이후 상당한 타격을 받고있다고 강조하고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작업계에 배정된 TV홍보비 거출건에 대하여 집중 토의한 바 농장별 부화기 입란수에 비례하여 3등분으로 구분하여 배정된 금액을 거출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 대체적으로 각지역별 출하물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못하는 원인은 소비부분에 있어 예년에 비해 다소 둔



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대체적으로 초생추 가격은 300원선, 하이, 세미 가격은 600원선으로 거래가 형성되어 있으며, 질병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추물량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UR협상이 타결되어 일정에 따라 닭고기가 수입개방됨으로 인해 각 사육농가들은 일반사육보다 계약사육형태를 더 선호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신입직원채용



◀ 박민화

본회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그동안 근무해 온 김명우양이 의원면직됨에 따라 신입직원 박민화(위례상고졸업예정)양을 지난 12월 7일부로 채용했다.